

대전지방법원 2024. 3. 6 선고 2023가단249309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고(선정당사자)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4. 2. 28.

판 결 선 고 2024. 3. 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의 4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D호를 인도하라.
2. 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에게 1,300,000원, 선정자 E에게 1,300,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4. 2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3. 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 E에게 2023. 10. 2.부터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각 월 150,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4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5. 제1 내지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1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정도영

[별지1]**청 구 원 인**

1. 원고(선정당사자) A, 원고(선정자) E는 모자지간으로서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이고, 피고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D호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고 합니다)를 임차한 임차인입니다.

2. 부동산임대차계약 등

가. 한편, 원고(선정당사자) A의 부친인 소외 망 F은 2020. 6. 1.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3,000,000원, 월차임 금300,000원, 임대차기간은 2020. 6. 1.부터 2022. 5. 31.까지(24개월)로 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(이하 '이 사건 계약'이라고 합니다)을 체결 한 사실이 있습니다.

나. 그동안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면서 2023년 10월 1일까지 밀린 월차임 등 금2,600,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.

다.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임하여 현재까지 밀린 월세 등 금 2,600,000원을 지급해 줄 것과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.

3. 그러므로 원고들은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받고자 본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.

[별지2]

부동산의 표시

1. 대전광역시 유성구

[도로명주소]대전광역시 유성구

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 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 (11가구)

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53.12㎡

2층 다가구주택(4가구) 189.58㎡

3층 다가구주택(4가구) 189.58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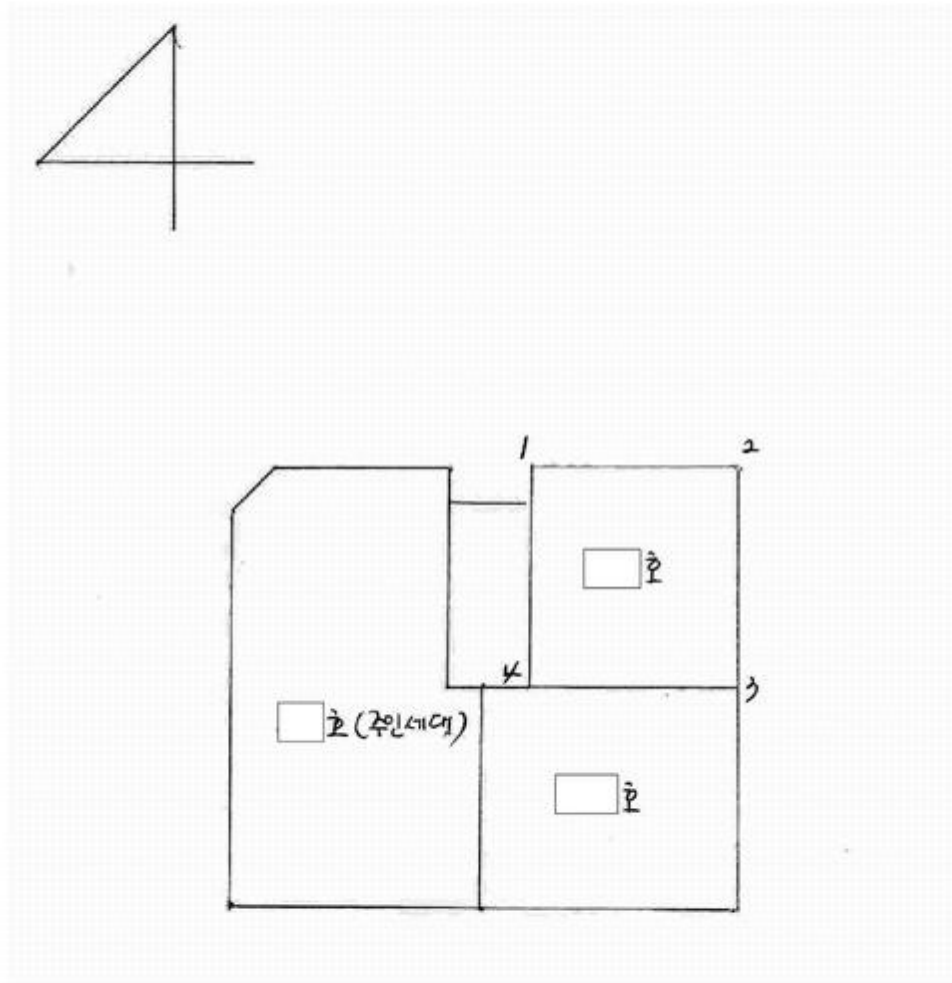
4층 다가구주택(3가구) 192.52㎡

<위 부동산표시 중 4층 호 약 52.43㎡ 전부>

- 이 상 -

[별지3]

도면 표시



선 정 자 명 단

- 1. A
 - 2. E
- 끝.

